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2 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한정애·이학영·정성호

송옥주 · 허종식 · 서영교

박홍근 • 장철민 • 강선우

이소영 · 강준현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,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'순환정지후 장기기증(DCD,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)'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이 뇌사자 위주로 장기기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,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'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'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. 이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

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그 가족이 장 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1항 단서).
- 나.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 뿐 아니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 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 록 함(안 제20조제1항).
- 다.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 망시각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1조의2 신설).
- 라.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(안 제27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2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단서 중 "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"을 "뇌사자, 「호스피스・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"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"를 "뇌사추정자, 뇌사판정대상자 및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(이하 "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")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뇌사추정자"를 "뇌사추정자와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뇌사자의"를 "뇌사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뇌사자의"를 "뇌사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뇌사판정대상자"를 "뇌사판정대상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를"로 하며,같은 조 제6항 중 "뇌사판정대상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를"로 하며,같은 조 제6항 중 "뇌사판정대상자에"를 "뇌사판정대상자와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에"로 한다.

제3장제3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사망시각)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중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 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.

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,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) 「호스피스·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의 적출 또 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

제14조(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) 제14조(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)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 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장기등 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-----뇌사자. 「호스피스・완

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 제15조에 따라 연명의료중

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

자 또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

② ~ ⑤ (생 략)

제20조(장기구득기관)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 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,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,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 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장기구득기관) ① ------

-----뇌사주정자, 뇌사판 정대상자 및 「호스피스・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 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(이하

| 2 | (생 | 략) |
|---|------|----|
| | ('8' | ヨノ |

-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<u>뇌사추정자</u>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할 것
- 2.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<u>뇌사자의</u>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
- 3. (생략)
- ④ (생 략)
- ⑤ 장기구득기관은 <u>뇌사판정대</u> <u>상자</u>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 득 전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

| "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")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|
| |
| |
| |
|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|
| |
| 1. <u>뇌사추정자와 연명의료중단</u> |
| <u>등결정자</u> |
| |
| |
| |
| 2 |
| 뇌사자와 연명의료중단등 |
| 결정자의 |
| |
| |
| 3. (현행과 같음) |
| ④ (현행과 같음) |
| ⑤뇌사판정대 |
| 상자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 |
| 를 |
| 트 |
| |

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<u>뇌</u>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⑦·⑧ (생 략) <신 설>

<u><신</u>_설>

| <u>.</u>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6 | |
| | |
| | <u>노</u> |
| 사판정대상자와 「호스피 | 스・ |
|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| 있는 |
|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| 관한 |
| 법률」 제19조의2제2항에 | 따라 |
| 통보받은 연명의료중단등 | 결정 |
| <u> 자에</u> | |
| | |
| | |
| | |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2(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사망시각)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자 중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 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.

<u>제27조의2(연명의료</u> 담당의사의 장기등의 <u>적출 등 금지)</u> 「호 <u>제27조의2</u>(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) (생 략)

1. ~ 7. (생 략) <신 설> 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7조의3(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) (현행 제27조의2와 같음)

| 제48조(벌직) | |
|----------|------|
| | |
| | |
| | |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의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자